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

2004. 3. 11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2004. 3. 11

 한국사회학회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2004 한국사회학회**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일시: 2004년 3월 11일(목) 오전 9:30~12: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주최: 한국사회학회

후원: 여성부

 한국사회학회

*Proceedings for a Conference on the Migrant Women in Entertainment Sector of Korea*

News Conference Room, the 19<sup>th</sup> floor,  
Korea Press Center, Seoul, Korea  
11 March 2004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Miju-Harvard Officetel #904, 875-7 Bongcheon-dong, Gwanak-gu, Seoul 151-836, Korea

## 발간사

외국인 여성 성매매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에서는 2003년 여성부 연구용역으로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은, 국제이주 또는 여성학 연구의 전문가들인,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 호주 RMIT대학교 셸리 이아(Sallie Wilton Yea) 교수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국내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외국여성의 성매매 실태를 사회학·인류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유입과정, 국내에서의 일과 생활 전반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 수많은 토론 주제를 제기한 것으로 자평한다. 특히, 외국여성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본다.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정귀순 대표님과 정정수 선생님, ‘벗들의 집’의 스테파나 수녀님과 막달레나 수녀님, ‘안양 전진상복지관’의 이금연 관장님과 김민정 선생님, ‘창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이철승 소장님과 우삼열 상담실장님은 외국인 여성대상의 조사연구와 심층면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다.

심층면접을 수행할 때 동행하며 통역을 해준 분들도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노어노문학과 김경민 씨는 러시아어 통역을 하였고, 필리핀 여성 셰릴(Cheryl, 가명) 씨는 경기도 동두천과 전라북도 군산에서 필리핀 여성 대상의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일을 맡았으며, 미군 병사 팀(Tim, 가명)과 로버트(Robert, 가명)는 기지촌 지역 클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또 조사연구를 위해 업소를 방문할 때 연구자와 동행해주었다.

‘새움터’의 전수경 선생님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은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도움 말씀을 주셨다.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순진 교수님과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님은 한국 남성의 성 행동 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원의 지도·감독을 맡아주셨다.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콘페리도(Reydeluz Conferido) 노무관님과 노무관실 직원들, ‘서울 해화동성당’의 글렌 자론(Glenn G. Jaron) 신부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

상희 변호사님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

필리핀의 '노동연구소'(Institute of Labor Studies)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 '부클로드'(Buklod) 관계자 여러분, '여성 인신매매 반대 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 Asia Pacific: CATW-AP)의 엔리케스(Jean Enriquez) 씨와 관계자 여러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김종민 영사님은 연구자들이 필리핀 현지 조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윈록 인터내셔널(Winrock International)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사무소의 퀸(Kelly Quinn) 씨는 송출지역으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셨다.

국제이주기구 본부의 이정혜 박사님과 마르코 그라메냐(Marco Gramagna) 인신매매방지국장님, 리드(Bruce Reed) 마닐라 사무소장님, 키르기스스탄 비시케크(Bishkek)·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러시아 모스크바(Moscow) 사무소 관계자 여러분은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한편, 각종 자문에 응해주셨다.

질문지 조사에 응해준 195명의 여성들, 국내 심층면접에 응해준 32명의 여성들, 필리핀 현지에서 심층면접에 응해준 11명의 여성들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히 밝혀 주었다. 또한 질문지 조사에 응해준 한국 남성 1,204명도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정확히 알려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연구보조원으로서 우리의 연구를 성심 성의껏 도와준 남궁명희(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서영(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 석사과정), 심경섭(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이종미(강원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정혜선(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황희경(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엘레나 마트비바(Elena Matveeva,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씨에게도 감사드린다.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강실 대표님,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조국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분들의 토론을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 연구진은 조사 결과 발견된 사실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해석 작업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발표회를 후원해 준 여성부와, 연구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한국사회학회의 김두식 회장님과 김성국 전회장님께 감사드린다.

2004년 3월 11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설동훈

• • ● 목차 ● • •

□ 설동훈 · 김현미 · 한건수 · 고현웅 · 샐리 이아, 한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보고 .....	1
□ Dong-Hoon Seol, Hyun Mee Kim, Geon-Soo Han, Hyun Ung Goh, and Sallie Wilton Yea, The Current Situation of Migrant Women Employed in the Sex and Entertainment Sector of Korea .....	19
□ 토론문 .....	37
조  국 .....	39
김은실 .....	41
김현선 .....	43
이강실 .....	47
□ 부록: 성매매방지법 .....	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5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63
성매매방지법 설명자료 .....	70
윤락행위등방지법 .....	79

## 표 차례

<표 1> 장·단기 예술홍행 사증 소지 국내 외국인 여성 연예인 수, 2002년 .....	3
<표 2> 한국에 오기 위한 경비 지불 방법 .....	6
<표 3> 경비 지불 유형별 소요 금액 .....	6
<표 4>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복수 응답) .....	7
<표 5> 하루 평균 노동시간 .....	8
<표 6> 한 달 평균 소득 .....	8
<표 7>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금액 .....	9
<표 8> 업소 규칙 위반 시 벌칙 .....	10
<표 9>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경험 .....	11
<표 10> 지난 1년간 한국남성의 외국인 여성 성구매 경험과 횟수 및 비용 .....	12
Table 1. The Number of Migrant Women Retaining Long-term or Short-term E-6 Visa in 2002 ...	21
Table 2. Who Paid the Cost to Enter Korea? .....	24
Table 3. Migration Expenses by Payer(s) .....	24
Table 4. Services that Migrant Women Offer (Multiple Responses) .....	25
Table 5. Daily Working Hours .....	26
Table 6. Average Monthly Wages .....	26
Table 7. Payment for Service .....	27
Table 8. Punishments from Disobedience to Regulations .....	28
Table 9. Experience of Forced Sexual Service .....	29
Table 10. Korean Men's Sex Purchase of Migrant Women throughout Last 1 Year ...	30

# 한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고현웅(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소장)

샬리 이아(호주 RMIT대학교 국제발전전공 교수)



## 한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설동훈 · 김현미 · 한건수 · 고현웅 · 켈리 이아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부터 귀국 후 현지 적응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실태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유흥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1> 장·단기 예술홍행 사증 소지 국내 외국인 여성 연예인 수, 2002년

(단위: 명)

	전체	장기 사증			단기 사증		
		소계	합법	불법	소계	합법	불법
전체	5,500	4,453	3,377	1,076	1,047	570	477
러시아	2,596	2,201	1,877	324	395	110	285
필리핀	1,726	1,254	668	586	472	346	126
우즈베키스탄	515	484	389	95	31	27	4
키르기스스탄	152	133	104	29	19	4	15
우크라이나	126	109	102	7	17	7	10
베트남	87	19	2	17	68	67	1
벨로루시	62	53	52	1	9	0	9
중국	62	54	51	3	8	1	7
카자흐스탄	40	36	34	2	4	4	0
불가리아	30	30	27	3	0	0	0
몽골	20	20	16	4	0	0	0
몰도바	11	10	10	0	1	1	0
기타	73	50	45	5	23	3	20

자료: 법무부, 『2002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3에서 계산.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사회학회(연구책임자: 설동훈)에서 여성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여성부, 2003)를 요약한 것이다. 논문과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 또는 한국사회학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① **국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조사:**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이주와 취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다. 실제 조사를 수행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의정부·동두천·안양, 부산, 경남 창원, 전북 군산이다. 서울과 지방, 미군 기지촌 지역과 기타 지역, 대도시와 소도시·농촌을 두루 포함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사연구에 응답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195명(구소련 89명, 필리핀 106명)이다. 아울러, 표본조사 대상자들 중 32명(구소련 17명, 필리핀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는 2003년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 달간 수행하였다.

② **인신매매 피해 필리핀 여성에 대한 필리핀 방문 조사:** 국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출된 후 필리핀으로 귀환한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 방문 조사는 2003년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수행되었다.

③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대한 한국인 남성의 태도 조사:** 잠재적 ‘수요자’ 집단인 한국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성에 대한 태도, ② 성구매 경험과 태도, ③ 외국인 여성의 성구매 경험과 태도, ④ 성적 취향과 성관계 경험 등이다. 실제 조사를 수행한 기간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이고, 조사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의 중부권, 대구·부산·울산·경상의 영남권, 전북·광주·전남의 호남권의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1,204명의 유효 응답자 표본을 확보하였다.

④ **문헌연구와 법·제도 분석:** 국내법, 국제협약, 외국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관련 법·제도 분석, 국내외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연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3. 주요 연구결과

①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출신국 특성:**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은 구소련과 필리핀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조선족)·베트남·태국·페루·스리랑카·네팔·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도 있다.

②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의 국내 유입 원인 분석:**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국가들간의 불균등 발전과 성의 상품화, ② 인력을 해외로 송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인력송출업자 또는 국제인신매매조직, ③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해외 송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및 가부장제 문화, ④ 성산업에 필요한 여성을 충원하려는 한국사회와 그것을 방관한 정부정책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규모로 국내에 유입시킨 원인으로 파악된다.

③ **이주와 업소 배치:** 외국인 여성들은 본국에서의 빈곤과 실업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들은 한국 취업에 관한 정보를 친구, 대중매체, 인력송출업체 등에서 입수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여성 195명 중에서 '예술홍행'(E-6)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90.9%이고, '관광 또는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8.0%에 불과하다.

그들의 66.8%는 한국에서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믿고 오디션을 거쳐서 온 경우이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디션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중 19.0%는 한국에서 오디션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33.2%는 오디션을 보지 않은 채 한국에 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홍행 사증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의 충원 제도로 운영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월급, 근무 시간 등에 대한 규정과 복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의 고용주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외국인 여성의 76.6%가 매니저라고 응답하였으며, 업소 주인이라는 응답은 23.4%로 나타나, 매니저가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의 현재 고용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술홍행 사증 소지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 취업이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표 2> 한국에 오기 위한 경비 지불 방법

(단위: %)

	전체	구소련	필리핀
(N)	(183)	(81)	(102)
내가 모두 지불했다	12.6	23.5	3.9
나와 에이전트가 나누어 지불했다	18.0	29.6	8.8
에이전트가 모두 지불했다	69.4	46.9	87.3
계	100.0	100.0	100.0

<표 3> 경비 지불 유형별 소요 금액

(단위: 달러, 개월)

유형	세부 항목	전체	구소련	필리핀
전체	(N)	(183)	(81)	(102)
	총액(달러)	1,574.30	1,096.16	1,953.99
여성이 전액 지불	(N)	(23)	(19)	(4)
	총액(달러)	760.97	508.65	1,959.50
여성·에이전트 공동 지불	(N)	(33)	(24)	(9)
	총액(달러)	954.96	704.00	1,624.17
	여성(달러)	300.41	179.00	624.17
	에이전트(달러)	654.55	525.00	1,000.00
에이전트가 전액 지불	(N)	(127)	(38)	(89)
	총액(달러)	1,882.52	1,637.60	1,987.10
	월상환액(달러)	316.63	332.17	310.00
	상환기간(개월)	5.97	4.93	6.41

주: 에이전트가 전액 지급한 경우의 경비는 원화로 갚아야 하므로,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질문하였다. 그러나 이 표를 작성할 때에는,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1달러당 1200원을 기준으로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였다.

유흥업 종사 외국인 여성의 송출비용은 제조업·건설업·농림수산업에 취업 중인 이주 노동자의 송출비용보다 현저히 낮다. 이주노동자의 송출비용은 평균 3,815.4달러인 데 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송출비용은 평균 1,574.30달러에 불과하다. 그들의 입국경비 중 상당 부분을 연예기획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예기획사에서는 그들의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여성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빚을 갚고 있다. 에이전시에서는 여성들에게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월급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옷이나 화장품을 살 수 있도록 약간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은 이 빚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수수료도 갚아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지 않고 에이전시에서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다.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여성들은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더라도 그 요구를 쉽게 물리치지 못한다.

④ **유홍업소 취업유형과 노동조건:** 구소련 여성들은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단란주점 등과 같은 유홍업소와 기지촌 미국인 전용 클럽, 그리고 이태원이나 부산의 “텍사스촌” 클럽 등에서 취업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은 대부분이 기지촌 클럽에서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이 댄스와 접대를 병행하는 것에 비해, 미군 기지촌 클럽은 댄스보다는 접대가 우선이다. 여성들은 다양한 노동, 즉, 공연(댄스), 접대(테이블서비스), 성적 서비스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춤 73.7%, 주스·음료·주류 판매 64.7%, 서빙 60.5%, 고객이 내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53.9%로 나타났으며, 섹스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비율도 33.5%나 되었다.

<표 4>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복수 응답)

(단위: %)

(N)	전체 (167)	구소련 (64)	필리핀 (103)
춤	73.7	73.4	73.8
주스, 음료, 주류 판매	64.7	35.9	82.5
서빙	60.5	32.8	77.7
고객이 내 몸을 만지거나 더듬기	53.9	29.7	68.9
섹스	33.5	12.5	46.6
무대 위에서 야한 춤추기	32.9	6.3	49.5
노래	32.3	39.1	28.2
고객의 무릎 위에 앉기	26.9	1.6	42.7
손으로 고객의 성기를 애무하기	12.6	1.6	19.4
오랄섹스	9.0	1.6	13.6
기타	3.6	9.4	.0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일 없이 일한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늘 정시이지만, 마치는 시간은 손님이 남아 있는 한, 새벽 4시, 5시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외국인 여성의 주중근무시간은 평균 8.37시간, 주말근무시간은 9.76시간이다. 유

홍업소에 취업중인 여성들의 2003년 월평균 임금은 78.47만원인데, 국내 이주노동자의 2002년 월 평균임금인 995,816원보다 현저히 낮다.

<표 5> 하루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 시간)

(N)		전체 (175)	구소련 (74)	필리핀 (101)
주중	근무시작 시간(오후)	6.21	7.19	5.49
	근무종료 시간(오전)	2.58	4.09	1.47
	노동시간(시간)	8.37	8.90	7.98
주말	근무시작 시간(오후)	6.05	7.17	5.28
	근무종료 시간(오전)	3.81	4.09	3.62
	노동시간(시간)	9.76	8.92	10.34

<표 6> 한 달 평균 소득

(단위: 만원, %)

(N)	전체 (148)	구소련 (66)	필리핀 (82)
기본급	43.85 (55.9)	46.64 (58.6)	41.61 (53.7)
주스 · 주류 · 음료 판매 수당	15.71 (20.0)	.71 (0.9)	27.78 (35.8)
테이블 사용료	9.18 (11.7)	20.18 (25.6)	.33 (0.4)
2차를 통한 소득	5.30 (6.8)	2.82 (3.5)	7.30 (9.4)
팁	4.42 (5.6)	9.26 (11.6)	.52 (0.7)
월 평균 총소득	78.47 (100.0)	79.61 (100.0)	77.55 (100.0)

외국인 여성의 임금은 기본급 43.85만 원, 주스 · 주류 · 음료 판매 수당(필리핀) 또는 테이블 사용료(구소련)로 24.89만 원, “2차” 수당 또는 팁으로 9.72만 원으로 구성된다.

외국인 여성들은 그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받는다. 전문적으로 쇼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월 800~1,0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데, 스트립쇼를 하는 여성은 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댄서로 왔지만, 주로 테이블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은 400~5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외국인 여성들은 고객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 ‘삽입 성교’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23.14만원인데, 그 중 여성이 받는 금액은 6.77만원으로 29.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업원 1인당 하루 평균 섹스 서비스 횟수

는 1.03번으로 나타나, 하루에 1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금액

(만원, 횟수, N)

	1회당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	그 중에서 종업원이 받는 금액	종업원 1인당 하루평균 서비스 횟수
주스판매	1.13 (104)	.25 (101)	7.17 (92)
손으로 고객의 성기 애무하기	1.80 (5)	.28 (4)	2.50 (4)
오랄섹스	1.55 (6)	.80 (5)	2.50 (4)
삽입 섹스	23.14 (43)	6.77 (31)	1.03 (32)

외국인 여성이 업소를 옮기는 주된 이유는 매니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성매매를 강요해서(26.4%), 급여 수준이 낮아서(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은 '공장노동자'라는 응답이 전체의 87.2%로 나타났다. 필리핀 여성의 92.1%, 구소련 여성의 66.7%가 공장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그들이 하는 일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적'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삶의 질과 인권침해:**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벌칙 및 벌금제도에 묶여 있다. 벌칙은 음주, 남자친구, 지각, 핸드폰 사용 등 일상적인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수행된다. 외국인 여성들은 업소 주인이나 한국인 매니저, 웨이터 등에게 신체적·언어적·성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데, 클럽 사장이나 직원, 매니저가 여성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구소련과 필리핀 여성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계를 강조하고, 명령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간이 아닌 '동물'로 여긴다는 불만을 표시한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술, 담배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자주 몸이 아프지만, 매니저나 업소 주인이 여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은 거의 없다. 여성들이 아플 때, 건강보험은 무용지물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8.8%에 불과하고, 가입된 사실을 알더라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결국, 그냥 참고 버티거나 약을 사 먹는 등 여성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표 8> 업소 규칙 위반 시 벌칙

(단위: %)

(N)		전체 (122)	구소련 (46)	필리핀 (76)
지각	구두 경고	23.0	30.4	18.4
	벌금	57.4	26.1	76.3
	휴일 박탈	2.5	6.5	.0
	외출금지	12.3	30.4	1.3
	외출폭행	.8	.0	1.3
	기타 처벌	4.1	6.5	2.6
결근	구두 경고	11.4	19.4	7.2
	벌금	80.0	66.7	87.0
	휴일 박탈	1.0	2.8	.0
	외출금지	2.9	5.6	1.4
	기타 처벌	4.8	5.6	4.3
근무 중 만취	구두 경고	46.8	25.9	55.2
	벌금	22.3	18.5	23.9
	외출금지	22.3	51.9	10.4
	외출폭행	4.3	.0	6.0
	기타 처벌	4.3	3.7	4.5
친구, 애인과 무단 외출	구두 경고	30.9	18.2	37.7
	벌금	43.6	60.6	34.4
	외출금지	5.3	15.2	.0
	외출폭행	7.4	3.0	9.8
	기타 처벌	12.8	3.0	18.0
계약 만료 전 업소 일을 그만둬	구두 경고	10.5	16.7	6.8
	벌금	80.0	69.4	86.4
	휴일 박탈	2.1	2.8	1.7
	외출금지	4.2	11.1	.0
	외출폭행	1.1	.0	1.7
	기타 처벌	2.1	.0	3.4
계		100.0	100.0	100.0

임신의 경우에도, 남자 친구와 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의 업소에서의 일로 임신한 경험은 응답자 176명 중 9.1%(16명)가 1회의 경험이 있으며, 2회 경험도 1.7%(3명)로 나타나, 약 10명중에 1명은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16명 중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은 임신경험자의 31.3%인 5명이다. 또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은 임신경험자(유효응답자 15명)의 80.0%인 12명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업소 근처의 '모텔'에서 기거하거나 업소와 붙어있는 건물의 위층에 마련된 집단 숙소에 산다. 모텔 등 독립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이 응답자의 54.2%이고, 업소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은 42.9%이다.

한편, 오랄섹스나 섹스 등의 성적학대를 강요받은 경험은 한국인 고객한테 강요받은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65.2%가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요구받은 적이 있으며, 27.0%가 업소주인으로부터 그러한 일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소련 여성은 한국인 고객(80.8%), 업소주인(50.0%), 매니저(36.4%) 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강요 받은 적이 있고, 필리핀 여성은 한국인 고객(55.0%), 미국인 고객(47.6%), 기타 외국인 고객(26.7%)으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경험

(단위: %)

		전체	구소련	필리핀
(N)		(126)	(40)	(86)
업소 주인	그런 적 없다	73.0	50.0	83.7
	때때로	22.2	40.0	14.0
	자주	4.8	10.0	2.3
매니저	그런 적 없다	86.6	63.6	96.2
	때때로	13.4	36.4	3.8
	자주	0.0	0.0	0.0
한국인 고객	그런 적 없다	34.8	19.2	45.0
	때때로	48.5	50.0	47.5
	자주	16.7	30.8	7.5
미국인 고객	그런 적 없다	61.7	88.9	52.5
	때때로	36.4	7.4	46.3
	자주	1.9	3.7	1.3
모국인 고객	그런 적 없다	93.9	93.1	94.3
	때때로	5.1	3.4	5.7
	자주	1.0	3.4	.0
기타 외국인 고객	그런 적 없다	74.0	75.9	73.2
	때때로	20.0	17.2	21.1
	자주	6.0	6.9	5.6
계		100.0	100.0	100.0

⑥ **한국인 남성의 성구매 행동:** 한국인 남성이 처음으로 성구매 경험을 한 평균 연령은 21~22세이다. 그들이 성구매를 하게 된 상황은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갔다'라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남성 문화에서 최초 성구매 경험이 동료나 친구와 같은 또래의 부추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간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구매한 경험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4.4%(119명)였다. 구소련 여성과 성구매를 하였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조선족이라는 응답이 21.7%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구매 횟수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응답이 평균 1.8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이라는 응답이 평균 1.26회, 구 소련 1.2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1회당 평균비용은 구 소련이 평균 11.4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필리핀으로 평균 9.2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 비용에 대해 외국인 여성들은 23.14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 분포가 다를 뿐 아니라, '2차'와 'VIP룸', '긴 시간'과 '짧은 시간', 미군 병사와 한국인 남성 등 구매자 속성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 10> 지난 1년간 한국남성의 외국인 여성 성구매 경험과 횟수 및 비용  
(단위: %, 회, 만원)

(N)	성구매 경험	성구매 횟수	1회당 비용
	(119)	(119)	(119)
구 소련	67.5	1.24	11.42
중국 조선족	21.7	1.88	6.09
필리핀	17.4	1.26	9.22
중국 한족	6.1	1.00	8.75
기타 나라	14.8	1.14	14.29

⑦ **인신매매 피해 여성 소송 추진 사례 분석:**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시도했던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한국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이 입국하였고, 심지어는 계약서마저 보지 못하였다. 한국법에서 보호해주는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실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감옥에 가는 것인지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경찰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데, 본인들이 인지하기에 이미 “구금”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⑧ **외국인 여성 성매매 정책의 국제비교:** 미국은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성매매는 미국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간주하여,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의 한 형태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성매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네덜란드 등은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는 근본적으

로 근절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부규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네덜란드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개인적인" 행위들은 공식적으로 묵인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2000년 10월 1일 포주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포주업을 허용'하였다.

한편, 일본의 성산업 규모는 약 10조 엔(8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매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의 수는 수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제법으로서 국제연합의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부속의정서'와 유럽연합의 '인신매매 방지 포괄정책', 독일 '형법'의 인신매매 처벌 규정, 벨기에 '이민법'과 '형법'의 인신매매 처벌 규정,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 필리핀의 '인신매매 방지법' 등의 분석을 통해, 인신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 조항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법에는 현재 인신매매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단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직업안정법' 등의 법률에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신매매와 관련한 사건들이 범죄구성요건 및 입증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개별 법률들에 의해 사건마다 다르게 다루어짐으로써 형량관계 및 사법처리 상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현행 개별 법률들의 협소한 규정이 국제적 인신매매와 관련한 범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현행법체계는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대체하면서,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할 만하다. 이들 법률의 특징은 기존의 성매매 금지주의와 쌍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성매매를 성을 파는 자와 사는 자의 2자관계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가 포함된 3자관계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선불금, 폭행,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여성, 선불금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했거나 여권 등 증명서를 제공받은 경우 그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을 면제한 점은 피해여성들의 신고를 꺼리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외국인 여성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고소·고발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였

다. 또한,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는 3개월 이내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입증되고 인신매매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그들에게 일정 기간 체류자격을 주고 탈성매매 지원 및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정책 제언

① **예술홍행 사증 발급 체계 개선:** ‘예술홍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과 ‘홍행’ 사증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급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일반유홍업 종사를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출입국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근로자 파견 식의 연예인 고용 관행 개선:** 현재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개입되는 주체는 크게 송출업체와 연예기획사 및 업소로 나눌 수 있다. 거의 대부분 영세 규모로서, 가족기업 형태로 관련자가 업체 대표를 맡고 회사들끼리의 업무분담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다른 회사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단일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그들의 노무관리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권침해 등을 일으킨 연예기획사와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외국인 연예인 인력 수입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홍업 종사 외국인 여성의 근로감독 체계 개선:** 유홍업 종사 외국인 여성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신체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노동부가 유홍업소에 취업 중인 외국인 여성의 근로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감독이 가능한 길을 모색하거나, 그 업무를 여성부 등 타 부서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기지촌 클럽의 영업 방식 개선:** 현재 기지촌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스 영업”은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자의든 타의든 고객들이 주스를 사주도록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2차”의 유혹, 또는 강요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법적으로 예술홍행 사증 소지자는 이러한 고객 접대 행위를 할 수 없다. 결국, 기지촌 클럽에 고용되는 외국인 여성들은 접대부가 아니며 예술홍행 사증을 소지하고 공연활동을 위해 한국에 온 연예인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⑤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의 확충을 통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지원:**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쉼터를 확충하고,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나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상담할 수 있는 쉼터나 기관의 연락처를 기록한 영어나 러시아어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민원피약 양식을 영어와 러시아어가 병기된 양식으로 배포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66 긴급 통역서비스도 쉼터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⑥ **주요 송출국에서의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집단 또는 일반대중에게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리고, 합법적 해외취업 통로를 가르쳐줌으로써, 해외 취업희망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잠재적 성구매 수요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는 대중 홍보 캠페인 전개:** 한국인 남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인 비하, 여성 비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⑧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인신매매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관할권의 확대:**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인신매매방지 포괄정책’, 미국은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통하여 해외에서 성매매·아동성매매·인신매매 등을 저지른 자국인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한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인신매매를 자행하거나 섹스관광을 하는 원인은 익명성 보장과 아울러 처벌의 위험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형사 관할권을 확대하여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⑨ **섹스관광에 관여한 업체의 처벌:** 상당히 많은 여행사들이 섹스관광을 알선하고 있으나, 정부의 특별한 제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섹스관광을 알선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 **국제결혼 알선 행태의 개선:** 현재 국내법상으로 국제결혼의 알선은 합법적인 사업이나, 현재 필리핀·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중국·몽골·러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 업체들은 결혼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3박 4일' 내지 '4박 5일' 형태의 국제결혼 관광을 떠난다. 그런데 이처럼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에는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내재한다. 정부는 국제결혼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적절한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⑪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정비:**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 정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각국 정부가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마치고, 또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2004년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신매매 피해여성이 소송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소송 만료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소송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 없이 쉼터에서만 지내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여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일정기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쉼터 내에서의 직업훈련 또는 취업기회 제공 등 소송기간 재활활동 및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⑫ **정부 부처간, 민간단체들,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정비:**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유관 부서로는 여성부뿐 아니라 법무부(사증 발급과 불법체류자 단속), 노동부(근로감독), 경찰청(윤락행

위등방지법 위반자 체포), 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 추천) 등의 부서가 있다. 본 조사 결과 밝혀진 바와 같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면, 그 구제 절차를 제도적으로 명료히 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내 민간단체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참고문헌

-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셀리아. 2003a.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셀리아. 2003b. 『외국인 여성 엔터테이너의 일과 삶』.  
한국사회학회.



## **The Current Situation of Migrant Women Employed in the Sex and Entertainment Sector of Korea**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Hyun Mee Kim (Yonsei University, Sociology)

Geon-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thropology)

Hyun Ung Go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eoul Office)

Sallie Wilton Yea (RMIT Univers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 The Current Situation of Migrant Women Employed in the Sex and Entertainment Sector of Korea

Dong-Hoon Se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Hyun Mee Kim (Yonsei University, Sociology)  
 Geon-Soo H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thropology)  
 Hyun Ung Go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eoul Office)  
 Sallie Wilton Yea (RMIT Univers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 INTRODUCTION

This research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purports to provide the empirical data as well as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situation of migrant women in the entertainment sector in Korea, encompassing their immigration process from their countries of origin to their return to home countries. As shown in the table 1,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women who come to Korea with the ‘Entertainment’ (E-6) visa tend to be trafficked and forced to prostitution during their legal stay in Korea. It is hoped that the outcome of the research will provide the solid foundation upo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can set up policie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Table 1. The Number of Migrant Women Retaining Long-term or Short-term E-6 Visa in 2002

	Total	Long-term visa			Short-term visa		
		Total	Legal	Illegal	Total	Legal	Illegal
Total	5,500	4,453	3,377	1,076	1,047	570	477
Russia	2,596	2,201	1,877	324	395	110	285
Philippines	1,726	1,254	668	586	472	346	126
Uzbekistan	515	484	389	95	31	27	4
Kyrgyzstan	152	133	104	29	19	4	15
Ukraine	126	109	102	7	17	7	10
Vietnam	87	19	2	17	68	67	1
Belarus	62	53	52	1	9	0	9
China	62	54	51	3	8	1	7
Kazakhstan	40	36	34	2	4	4	0
Bulgaria	30	30	27	3	0	0	0
Mongolia	20	20	16	4	0	0	0
Moldova	11	10	10	0	1	1	0
Others	73	50	45	5	23	3	20

Source: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al Yearbook on Departures and Arrivals 2002*, 2003.

## DATA AND METHOD

### *Research on migrant women in Korean sex and entertainment sector*

This research examined immigration processes and employment conditions of migrant women working in the Sex and Entertainment (hereafter S&E) sector in Ko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Seoul, Gyeonggi province (including Uijeongbu, Dongducheon, and Anyang), Busan, Changwon in Gyeongnam province, and Gunsan in Jeonbuk province. We tried to obtain objective result by encompassing Metropolitan Seoul and Busan, middle and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US military camp towns and non-military areas. In total, 195 migrant women – 89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including Russia,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and others, and 106 Filipinas (from the Philippines) – responded to the survey. Also, 32 women (17 CIS women and 15 Filipinas) among the survey respondents agreed to have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ers. The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the three months of period between August 25<sup>th</sup> and November 24<sup>th</sup> in 2003.

### *Field research on trafficked Filipino women who returned to their hometown*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in the Philippines for 11 days from November 6<sup>th</sup> to 16<sup>th</sup> in 2003. The interviewees were 11 Filipinas who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in Korea and finally rescu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 *Research on Korean men's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of migrant women'*

A survey on Korean men's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of migrant women was conducted, given Korean men's 'potential' demands for sexual services by migrant women. Respondents were asked about (1) their attitudes towards prostitution of foreign women, (2) experiences of buying sex, (3) experience of buying sex from migrant women, (4) sexual orientation and experiences in general.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10 days from November 24<sup>th</sup> to December 3<sup>rd</sup>, 2003, and 1,204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 *Literature review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egislations*

This research collected and analyzed international legislations and domestic laws of selected countries regarding prostitution of migrant women and trafficking, and other researches on these phenomena.

## RESULTS AND FINDINGS

### *Migrant women's countries of origin*

The migrant women working in the Korean S&E businesses have been predominantly from the CIS countries and the Philippines, followed by China (including ethnic Koreans), Vietnam, Thailand, Peru, Sri Lanka, Nepal, and Indonesia.

### *Causes of migrant women's influx into Korean S&E sector*

Main causes of migrant women's influx into the Korean S&E sector are as follows: (1)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mong states in the global capitalistic system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sex, (2) increasing individual traffickers and international trafficking groups seeking benefits from sending workers abroad, (3) serious poverty and unemployment prevailing in countries of origin,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patriarchal culture of countries of origin encouraging overseas employment of its nationals, and (4) demands for sex workers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government policies indifferent to this situation.

### *Immigration process to the Korean S&E business*

Migrant women came to Korea with a hope of seeking jobs and money that would set them free from poverty and unemployment prevalent in their home country. They garnered information on the job market in Korea through their friends, public media and recruiting agencies.

Among 195 respondents, only 8.0% got 'short-term visit or tourist visa' while 90.9% had E-6 visa. 66.8% of respondents went through an audition believing that they would work as art performers, but they were not fully informed of what they would do in Korea. 19% of the auditions were held in Korea. 32.2% of respondents were employed in the Korean entertainment business without auditions. It shows that the E-6 visa systems was utilized to meet the 'labor shortage' in S&E sector, deviating from its original objective.

Most of them signed contracts in one way or another. Although the contract specifies contract period, wages, working hours and labor welfare, most of those conditions are not met. Majority (76.7%) of the respondents identified their manager as the current employer, while club owners were mentioned by 23.4%. It is mainly because domestic employment of foreign entertainers with E-6 visa is governed by the *Worker Dispatch Act*.

Table 2. Who Paid the Cost to Enter Korea?

(N)	(Unit: %)		
	Total (183)	CIS women (81)	Filipinas (102)
Migrant woman only	12.6	23.5	3.9
Both migrant woman and broker/agent	18.0	29.6	8.8
Broker/agent only	69.4	46.9	87.3
Total	100.0	100.0	100.0

Note: The figure in parenthesis is the number of respondents.

Table 3. Migration Expenses by Payer(s)

Payer(s)	Detail	Total	CIS women	Filipinas
Total	(N)	(183)	(81)	(102)
	Expenses (\$)	1,574.30	1,096.16	1,953.99
Migrant woman only	(N)	(23)	(19)	(4)
	Expenses (\$)	760.97	508.65	1,959.50
Both migrant woman and broker/agent	(N)	(33)	(24)	(9)
	Total expenses (\$)	954.96	704.00	1,624.17
	Woman paid (\$)	300.41	179.00	624.17
Broker/agent only	Broker/agent paid (\$)	654.55	525.00	1,000.00
	(N)	(127)	(38)	(89)
	Total expenses (\$)	1,882.52	1,637.60	1,987.10
only	Monthly reimbursement (\$)	316.63	332.17	310.00
	Reimbursement period (month)	5.97	4.93	6.41

Note: Since the indebted woman should pay off with Korean currency Won (KRW) in case that a broker or agent paid all the expenses, they survey questions adopted Won, not Dollar. However, this table is written out in Dollar for convenient comparison, given that 1 USD is equal to 1,200 KRW.

Amount of fees for migrant women to be employed in the Korean entertainment business (on average, \$1,574.30) is much lower than that of migrant workers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on average \$3,815.4). It is because the recruiting agencies bear considerable amount of migration expenses.

Undoubtedly, recruiting agencies collect the amount invested. Upon

their arrival in Korea, migrant women start paying back the loans in the form of deducting certain amount of money from their salary. Many agencies pay for their air tickets and lend them some money to buy clothes and cosmetics until they get the first paycheck. In addition to these debts, migrant women should also pay a commission to the agency, the amount of which is not clearly set out, but varies at the whim of the agencies. The pressure to repay their debts makes it very difficult for migrant women to refuse the prostitution forced onto them.

*Employment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Women from the CIS are employed in nightclubs, Karaoke, and “Room Salons” for Korean customers or in exclusive clubs in U.S. military camp towns (*gijichon*), Itaewon in Seoul, and “Texas Street” in Busan. Most Filipino women are working in *gijichon* clubs for U.S. soldiers. While women in the clubs for Korean customers are required to wait on them and dance, women in *gijichon* clubs are involved mostly in serving customers rather than dancing. The services offered to customers consist of dancing (73.7%), beverage sales (64.7%), serving (60.5%), being groped (53.9%), etc. And, 33.5% of them responded to provide sex.

Table 4. Services that Migrant Women Offer (Multiple Responses)

(N)	(Unit: %)		
	Total (167)	CIS women (64)	Filipinas (103)
Dancing	73.7	73.4	73.8
Selling juice, drinks, beverages	64.7	35.9	82.5
Serving	60.5	32.8	77.7
Customer’s touching/fondling	53.9	29.7	68.9
Sexual intercourse	33.5	12.5	46.6
Sexy dancing on stage	32.9	6.3	49.5
Singing	32.3	39.1	28.2
Sitting on customer’s lap	26.9	1.6	42.7
Hand job	12.6	1.6	19.4
Blow job	9.0	1.6	13.6
Others	3.6	9.4	0.0

In general, migrant women work from 6 p.m. to 3 a.m. without day-offs. They start work on time everyday, yet closing time is likely to be prolonged to 4.a.m or 5 a.m. as long as customers are in the clubs. Average working hours reach 8.37 hours on weekdays and 9.76 hours on weekends.

Table 5. Daily Working Hours

		(Unit: Time, Hour)		
		Total	CIS women	Filipinas
(N)		(175)	(74)	(101)
Weekday	Opening time (p.m.)	6.21	7.19	5.49
	Closing time (a.m.)	2.58	4.09	1.47
	Working hours	8.37	8.90	7.98
Weekend	Opening time (p.m.)	6.05	7.17	5.28
	Closing time (a.m.)	3.81	4.09	3.62
	Working hours	9.76	8.92	10.34

Table 6. Average Monthly Wages

		(Unit: 10,000 Won, %)					
		Total		CIS women		Filipinas	
(N)		(148)	(66)	(82)			
	Basic wages	43.85	(55.9)	46.64	(58.6)	41.61	(53.7)
	Juice (or drink) commission	15.71	(20.0)	0.71	(0.9)	27.78	(35.8)
	Table charge	9.18	(11.7)	20.18	(25.6)	0.33	(0.4)
	Commission on bar fine	5.30	(6.8)	2.82	(3.5)	7.30	(9.4)
	Tip	4.42	(5.6)	9.26	(11.6)	0.52	(0.7)
	Average monthly wages	78.47	(100.0)	79.61	(100.0)	77.55	(100.0)

Average monthly wages in 2003 is estimated to be 784,700 Won, which is far lower than tha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who earned on average 995,816 Won a month in 2002.

The basic wage of migrant women is 438,500 Won and the perquisite for selling juice and drinks (for Filipinas) and waiting on the customers (for women from the CIS countries) amounts to 248,900 Won on average and 97,200 Won for going out on a “second round” (*yicha*) or tip.

Payment varies according to their jobs as well. Show girls get paid on average \$800-1,000 a month while strip dancers are paid more. Those who entered the country as dancers but wait on the customers get paid \$400-500 a month.

Some migrant women are getting paid for sexual services. A customer pays the lady on average 231,400 Won for a sexual intercourse, yet she gets 67,700 Won which amounts to only 29.3% of the original price. On average, one woman has 1.03 times of sex per day, that is, she prostitutes more than once a day.

Table 7. Payment for Service

	What a customer pays (10,000 Won)		What a woman earns (10,000 Won)		How many times a day (times)	
Selling juice	1.13	(104)	0.25	(101)	7.17	(92)
Hand job	1.80	(5)	0.28	(4)	2.50	(4)
Blow job	1.55	(6)	0.80	(5)	2.50	(4)
Sexual intercourse	23.14	(43)	6.77	(31)	1.03	(32)

Note: The figure in parenthesis is the number of respondents.

Migrant women move to another club because of a manager's unilateral decision (50.0%), the club owner's forced prostitution (26.4%), or low wages (20.8%). 87.2% of migrant women (92.1% of Filipinas, 66.7% of CIS women) expressed their wish to become "factory workers" in Korea. This illustrates their strong grievances against their current job as well as their aspirations to get out of their current work if possible.

####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conditions*

Migrant women working in S&E sector are subject to various kinds of punishments and penalty fees. They are likely to be punished for very ordinary activities like drinking, having a boyfriend, being late at work, possessing a cell phone, etc. Migrant women are often abused physically, verbally and sexually by Korean club owners, managers and waiters. The most frequent are verbal abuses that club owners, staffs or managers curse and yell at them. The CIS and Filipino women complained about the hierarchical system that is forced on them and orders that their managers give without any explanation. They also deplored that they were treated like 'animals' not human beings.

Table 8. Punishments from Disobedience to Regulations

(Unit: %)

		Total	CIS women	Filipinas
(N)		(122)	(46)	(76)
Being late to work	Warning	23.0	30.4	18.4
	Penalty fee	57.4	26.1	76.3
	No day-off	2.5	6.5	0.0
	Curfew	12.3	30.4	1.3
	Abuse	0.8	0.0	1.3
	Other	4.1	6.5	2.6
Being absent from work	Warning	11.4	19.4	7.2
	Penalty fee	80.0	66.7	87.0
	No day-off	1.0	2.8	0.0
	Curfew	2.9	5.6	1.4
	Other	4.8	5.6	4.3
Getting drunk at work	Warning	46.8	25.9	55.2
	Penalty fee	22.3	18.5	23.9
	Curfew	22.3	51.9	10.4
	Abuse	4.3	0.0	6.0
	Other	4.3	3.7	4.5
Going out on a date with boyfriend without permission	Warning	30.9	18.2	37.7
	Penalty fee	43.6	60.6	34.4
	Curfew	5.3	15.2	0.0
	Abuse	7.4	3.0	9.8
	Other	12.8	3.0	18.0
Quitting job before the contract is over	Warning	10.5	16.7	6.8
	Penalty fee	80.0	69.4	86.4
	No day-off	2.1	2.8	1.7
	Curfew	4.2	11.1	0.0
	Abuse	1.1	0.0	1.7
Other	2.1	0.0	3.4	
<b>Total</b>		<b>100.0</b>	<b>100.0</b>	<b>100.0</b>

Although women working in S&E sector often get sick from overworks, heavy drinking and smoking, club owners and managers rarely take care of their illnesses. Health insurance is good for nothing for these ladies when they are sick. Only 8.8% women have health insurance, and even those with the insurance coverage do not know how to benefit from it. Consequently, they are in effect left to their own devices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they either put up with their illness or just take over-the-counter medicines.

When they get pregnant, most likely they will find solution by herself or with her boyfriend. 9.1% of the ladies revealed of their experience of pregnancy related to their “work” in the club, and 1.7% of the women surveyed have been impregnated twice. This illustrates that approximately one out of ten women got pregnant from prostitution. Among the 16 women who reported their pregnancy related to their work, 5 ladies (31.3%) gave birth to children and 12 women (80.0%) went through abortions.

Most women working in this sector stay in ‘motels’ near clubs or in collective accommodations located on the upper story of the club building. 54.2% of respondents are living in separate lodges like motels and 42.9% are living in accommodations attached to clubs.

Table 9. Experience of Forced Sexual Service

		(Unit: %)		
		Total	CIS women	Filipinas
(N)		(126)	(40)	(86)
Club owner	Never	73.0	50.0	83.7
	Occasionally	22.2	40.0	14.0
	Regularly	4.8	10.0	2.3
Manager	Never	86.6	63.6	96.2
	Occasionally	13.4	36.4	3.8
Korean customer	Never	34.8	19.2	45.0
	Occasionally	48.5	50.0	47.5
	Regularly	16.7	30.8	7.5
American customer	Never	61.7	88.9	52.5
	Occasionally	36.4	7.4	46.3
	Regularly	1.9	3.7	1.3
Customer from home country	Never	93.9	93.1	94.3
	Occasionally	5.1	3.4	5.7
	Regularly	1.0	3.4	0.0
Customer from other countries	Never	74.0	75.9	73.2
	Occasionally	20.0	17.2	21.1
	Regularly	6.0	6.9	5.6
Total		100.0	100.0	100.0

It was also reported by the women that it was mainly the Korean customers who forced them into sexual abuses. 65.2% of respondents said that it was Korean customers who demanded the sexual services, and 27.0% said it

was the club owners. The CIS women were sexually abused by Korean customers (80.8%), club owners (50.0%) and managers (36.4%), while for Filipino women, it was Korean customers (55.0%), US customers (47.6%) and other foreign customers (26.7%) who demanded their sexual services.

*Korean men's attitudes towards prostitution*

Korean men, who purchase sexual services, tend to do so when they are between 21 and 22. 84.2% of respondents, who did purchase sex, answered that they did so incited by their friends. This implies that the instigation by friends or colleagues is a major cause for sex purchase in Korean male culture.

14.4% (119 men) of the respondents acknowledged having purchased sexual intercourse with foreign women during the past one year. Among them, 67.5% with women from the CIS countries and 21.7% with ethnic Koreans from China. The frequency of sex purchase was 1.88 times with ethnic Koreans, followed by 1.26 times with Filipinas, and 1.24 times with CIS women. The average cost per a sex purchase was 114,000 Won with women from the CIS countries and 92,200 Won with Filipino women. These costs are different from the cost reported by migrant women, which is 231,400 Won. These differences are derived from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variety of nationalities of migrant women, different service patterns (e.g. "2<sup>nd</sup> round" outside the bar or "VIP room service," etc.), and the time required for sexual services, as well as different sex-purchasing patterns between Korean male customers and U.S. soldiers.

Table 10. Korean Men's Sex Purchase of Migrant Women throughout Last 1 Year

(N)	Experience of sex purchase (%) (119)	The number of sex purchase times (times) (119)	Cost per a sex purchase (10,000 Won) (119)
CIS women	67.5	1.24	11.42
Korean Chinese	21.7	1.88	6.09
Filipinas	17.4	1.26	9.22
Chinese	6.1	1.00	8.75
Others	14.8	1.14	14.29

*Analysis of legal assistances provided to the victims of trafficking*

Every migrant woman who has litigated or attempted to litigate as a

victim of trafficking has never been to Korea before. Most of them had little knowledge about Korea, and didn't even have a chance to see their contract.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y had absolutely no idea on their rights and duties provided for by the Korean law. When they are admitted to the *Processing Center* of the Immigration Bureau, Ministry of Justice, it is not clear for them whether they are protected or being imprisoned, and the women experience extreme anx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 hard to imagine that they get extremely reluctant to inform the police of their problems, nor they stand for their lawful rights.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on prostitution of migr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prostitution prevails throughout the nation in spite of the all-out prohibition on it.

In Sweden, any form of prostitution is regarded as trafficking, and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re penalized. The official position paper of the Swedish government sets out that the prostitution is as a form of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Hence, the Swedish government views prostitutio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actively seeks countermeasures.

On the other hand, Germany and Netherlands adopt regulationist policy based on a perception that prostitution can be more effectively 'controlled' through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although it would be hard to be eradicated. In Netherlands, "personal" sexual activities are done with official connivance as long as those activities do no impinge on the social orders. On October 1, 2000, the Dutch government terminated prohibition on pandering and permitted 'pandering of voluntary prostitution.'

In Japan, it is estimated that the volume of sex industry reaches approximately ten trillion yen (\$83 billion), and the figure of illegal migrant women in this field amounts to tens of thousands.

This research also attempts to provid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s and national laws on trafficking by analyz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accompanying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 European Union's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9 July 2002 on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2/629/JAH) and national legislations of Germany, Belgium,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for a separate trafficking legislation. Instead, various criminal activities that comprise trafficking are penalized according to the relevant articles included in the *Criminal Act*,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al Crimes*, the *Child Welfare*

*Act*,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Juvenile Sex Protection Act*, the *Act on Sexual Dealing Prevention*, and the *Vocation Stabilization Act*. Nonetheless, current legal system bears limitations for efficient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trafficking for there could be a serious disparity in dealing with cases of trafficking depending on the specific nature of different laws including the activities constituting crime and ways to establish it. Furthermore, narrow interpretation in the current laws of trafficking fails to cover the wide range of crimes related to transnational trafficking.

The *Criminal Act on Soliciting Prostitution, etc.*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dopt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2 March 2004 replacing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of 1961, have set the landmark in the Korean legislation on prostitution. These Acts, while maintaining the prohibitionist policy on prostitution and the provision of dual punishment, have transformed the classical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prostitutes and customers into tripartite one including pimp, and provided for the possibility to criminalize his/her crim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ew Acts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for those who engage in prostitution to be recognized as victims rather than criminals in case she is: (1) forced to prostitution due to the violence, confinement, or debt bondage, (2) addicted to drugs, and (3) deprived of the freedom of movement or passport and other equivalent papers even she received the lump-sum payment upfront.

It is, however, regretful to observe that the Acts allow the victims to stay only until the legal proceedings are over, and no possibility to change their visa status. In the future, it is advised that the *Departures and Arrivals Control Act* be revised to provide for those, who have been established as genuine victims of trafficking and they have assisted in arresting and prosecuting the traffickers, residence permit for a period of time, during which rehabilitation assistance and/or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provided.

## **POLICY RECOMMENDATIONS**

### *Revision of E-6 visa issu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divide 'E-6' visa into 'art performances' and 'entertainment.' It would bring about more effective control on migrants who seek jobs in entertainment sector, while attracting more qualified artists by offering them advantages in their immigration procedures in Korea.

*Reform of entertainer employment practice in the form of worker dispatch*

Under the current system, those involved in the employment of foreign entertainers in Korea are divided into the recruiting agencies,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and clubs. Most of these businesses are usually managed in the form of family companies. Therefore, in many cases, the division of labor exists only in paper, while these works are shared by closely related people. This has been conveniently utilized by those companies as an excuse to evade responsibilities for delayed wages or forced sexual dealing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control over the companies bringing entertainers into the country needs to be beefed up, and a single government entity should b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coordinate the government monitoring. The track record of these agencies and clubs should be put into government database and those who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barred from bringing in or employing foreign entertainers.

*Revision of labor supervising system for migrant women in the S&E sector*

When a migrant woman in S&E sector has problems with her job, she is expected to visit the local labor office in pers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effectively victims of trafficking can report their sufferings when they are not guaranteed the freedom of movement. Therefore, if the Ministry of Labor is not in a position to supervise the work condition of migrant women in the S&E sector, other measures should be devised such as seeking cooperation with civil organizations for practical labor supervision or transferring the supervision to other government authority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and Equality.

*Revision of business patterns in clubs at *gijichon**

The so-called “juice business” habitually conducted in clubs around U.S. military camp towns forces migrant women to sell beverages to customers, and this entails high possibility of prostitution be it forced or not. According to the Korean law, migrant women retaining E-6 visa are not legally allowed to serve on customers. E-6 visa holders employed in *gijichon* clubs are not servers but entertainers who came to Korea to engage in entertaining performances and that’s what they should be doing.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trafficking through expansion of shelters*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facilities and beef up the human resources of the shelters for migrant women employed in S&E sector, for it is the last resort for them to fend for their dignity. It is also necessary to publish information pamphlets or manuals both in English and Russian containing

critical information such as their rights, and how to address their sufferings and contact details of shelters and other support organizations. The shelters also need to be equipped with basic information materials and forms to fill out both in English and Russian. Hotline (1336) services could also be reviewed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migrant women in consultation with the shelters.

*Public awareness campaign in migrant-send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otential victims in the countries of origin of the hazard of trafficking, as well as legitimate procedures of international employment. This will help would-be migrant workers make decisions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Public awareness campaign targeting potential sex purchasers*

Systematic public awareness campaigns should be pursued in order for Korean men to change the stereotyped and biased opinions on migrants, particularly women. In addition, it is indispensable to provide systematic information to the public on how to help migrant women when they spot human rights violation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o Koreans' sex tourism and trafficking abroa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d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n its nationals involved in sex tourism, particularly with minors, or trafficking abroad. Meanwhile, Korean men can go on sex tours or traffic women since they could remain anonymous and are rarely subject to punishment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control and eradicate such immoral crimes, it is necessary to expand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nd deal severely with the criminals.

*Punishment on agencies involved with sex tourism*

A significant number of travel agencies mediate sex tourism, but there doesn't seem to be any government regulations on such activities. It is indispensable to make legal provisions to punish brokers engaged in sex tourism.

*Revision in matchmaking practice for international marriage*

According to the Korean law, mediating transnational marriage is a legitimate business. Nevertheless,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transnational marriages arranged in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Vietnam, China, Mongolia, and Russia are always based on love. Korean matchmaking agencies gather would-be grooms organize a four or five-day "international

marriage tour.”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foreign women may become victims of trafficking in these types of marriag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make proper remedies immediately.

#### *Legislation of counter-trafficking law*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accompanying Protocols from the United Nations provides for a clear definition on trafficking. It also carries significant importance a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sets forth minimum standards for its member governments to punish criminals and protect victims. The Korean government is a signatory to this Convention but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ratified it ye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urry to complete ratification and legislate municipal laws to eradicate sex purchase and trafficking. Immediat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Convention into the Korean law including enactment should be pursued. While the legislation of the two Acts on Prostitutions in 2004 allow for the victims to legally stay in Korea during the legal proceedings, they are required to leave the country as soon as the lawsuit is over, and they have to remain protected in the shelters without any income, which are the main reasons why many victims of trafficking decline to pursue litigation. It is important, therefore, that those who have been established as victims of trafficking are given the possibility to change their visa status and remain in Korea for a period of time and work in the legitimate job. Also, rehabilitation assistance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assistance in their job searching should be also provided to them during the lengthy trial period.

#### *Networking among governments authorities,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 inter-agency cooperation is a prerequisite for addressing the problems of migrant women’s prostitution. Ministries and agencies concerned includ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Justice (including the Immigration Bureau), the Ministry of Lab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hould a great number of entertainers in Korea be victims of trafficking, as has been established during this research, it would be vital to streamline and clarify the system to rescue victims, and better organize the inter-agency collaboration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 amo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 REFERENCES

- Seol, Dong-Hoon, Hyun Mee Kim, Geon-Soo Han, Hyun Ung Goh, and Sallie Wilton Yea. 2003a. *Research on Migrant Women in Entertainment Sector in Korea*.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In Korean)
- Seol, Dong-Hoon, Hyun Mee Kim, Geon-Soo Han, Hyun Ung Goh, and Sallie Wilton Yea. 2003b. *Foreign Women Entertainers' Work and Life in Korea*. Seoul: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 Korean)

## 토론문

조 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현선(새움터 대표)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토론문

조 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자본의 국제화는 성매매의 국제화를 수반하고 있다. 발제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에 다수의 외국인 여성이 유입되고 있고, 합법적 틀을 활용하여 이 여성들을 성매매시장으로 공급하는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언어, 문화적 약점 때문에 내국인 성매매여성 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외국인 여성의 '취업' 행위의 상당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 외에도 우리 법체계는 형법상 영리목적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추업(醜業)사용목적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 6, 8항 등의 조문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인신매매 관련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1949년에 제정되어 정부가 1962년 가입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이하 '1949년 협약'), 1979년 제정되었고 정부가 1984년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이 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은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제11조),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발제문이 지적하는 점 이외에도 취약고리가 있다. 먼저 인신매매 여성의 '동의'의 문제이다. 상술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동의를 있다 할지라도**—소개, 유혹 또는 유괴(procures, entices or leads away)하는 자,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를 착취(exploits)하는 자”(강조는 인용자)를 처벌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1949년 협약’에 따르면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처벌되어야 하는데, 인신매매 관련 법규정들은 여성의 동의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다. 2002년 ‘성매매방지법안’의 경우는 “성적 인신매매를 한 자”의 정의를 제2조 제4호에서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등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한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 및 전매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법안 제2조 제4호, 강조는 인용자), 2004년 법안 통과시에는 동의 불문 규정이 탈락된 바 있다.

생각건대, 인신매매에 대한 여성의 진정한 ‘동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동의’에 의한 부녀매매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사고일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3조 제2항의 피구금부녀간음죄의 성립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다음으로, 발제문이 지적한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인신매매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관할권의 확대의 경우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있다. 특히 국내인이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성매매를 하거나, 이러한 관광을 알선하는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유럽연합의 ‘인신매매방지 포괄정책’,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형법 제3조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직권남용, 뇌물 등의 중죄에 한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도록 하여 ‘속지주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등 처벌법상의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즉 ‘섹스관광’ 알선업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처벌될 것이고, ‘섹스관광’ 참여자는 성매매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단, 법집행당국이 형법 제3조를 적용하여 ‘섹스관광’을 처벌하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는다.

한편, 현행법상으로 보장된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해당 여성에 대한 구체적·지속적 정보제공 및 권리보호·구제 장치가 필요하다. 여성부, 법무부 또는 경찰청 차원에서—형법적 해결은 아니지만—‘행정지도’를 통하여 각국어로 된 성매매여성의 권리 및 구제절차 등을 명기한 소책자를 각 유흥업소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당해 여성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토론문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들, 주택가의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에까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외모가 좋은 백인 여성은 러시아 성매매 여성으로 오해가 될 정도이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외국여성을 그들의 성과 관련시켜 한국사회에 위협스러운 (혹은 오염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만큼 외국여성들의 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외국여성의 성이 한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외국여성의 성이 매개되어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장치나 자원들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누구이고 그들은 왜 한국으로 이주·유입되어 오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은 한국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어떻게 배치되고 착취되는지를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즉,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에 이주하게 되었고 어떻게 유흥업소에 취업되고 배치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의 일의 조건과 과정, 생활 등은 어떠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성들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이 왜 성매매 여성으로 한국에 유입되는가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송출국가와 한국 간의 경제적 격차 그리고 외국인 여성의 성이 소비되는 한국 남성의 성시장을 그 구조적인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기본 방향은 이주 성매매 여성들의 이주와 노동 실상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이의 개선을 제언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기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제언에 대해 특히 E-6 사증발급에 대한 체계개선 그리고 E-6 사증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에 대한 정부부처의 책임소재와 협조체계 제언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개선책을 생각하기 위해 좀더 분명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인신매매에 대한 본 보고서의 입장이다.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연합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의

기준들을 적용하거나 혹은 인신매매를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을 발전시키는 것 등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이러한 측면을 좀더 강조하고 그것의 실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본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다양한 기준들과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본 보고서의 사례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본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6개의 속성(9쪽)을 정리하고 그것들 중에서 몇몇(둘째, 넷째, 여섯째) 속성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에게 해당된다(11쪽)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더 정치한 논의가 있어야 본 보고서의 목적이 좀더 명확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본 보고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생존 가능성, 수입 원일 수 있지만(35-36쪽), 그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과 노동과정은 착취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겪는 피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신매매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가 드러내고 있는 구체성으로부터 그 내용이 다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 여성들의 이주·이동이 송출인력회사, 매니저, 업주의 이윤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수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지가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성산업의 이윤 창출 메커니즘이 외국인 여성들을 어떻게 이윤 창출의 출처로 만드느지를 좀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그렇게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좀더 다르게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외국인 여성들의 개인적 동기를 넘어서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과 언어에 대한 문제 역시 좀더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한국에 대한 무지나 성산업에 대한 무지에 대한 문제는 러시아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의 성산업에 진출하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달라지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나 지방에서 여성들이 모집되고 있는 상황들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셋째, 러시아 여성과 필리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00쪽), 러시아 여성과 필리핀 여성이 경험하는 인종화된 한국의 성산업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한국남성이 외국인 여성의 성을 매수할 때 인종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 성산업이 인종화 되면서 송출회사들이 여성들을 수급하는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토론문

김현선(새움터 대표)

1996년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상담을 위해 만나기로 하였던 한 기지촌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알려왔다. 그 여성은 협회(특수관광업협회)가 외국인여성들을 모집해 주겠다고 클럽 포주들로부터 미리 주문을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선금까지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여성도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토론자도 그 당시에는 이 수상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 해 가을 포주들의 주문대로 8명을 주문한 클럽에는 8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10명을 주문한 클럽에는 10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기지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외국인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국내로 인신매매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인신매매의 경로는 그 이후 외국인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주요 루트로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으며, 범죄자들은 처벌을 면한 채 지금까지도 인신매매를 일삼으며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체가 버젓이 인신매매를 시도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을 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P시의 한 기지촌에서 베트남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포주가 벌금형으로 풀려난 후 또 다시 필리핀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감금하였고, 이러한 범죄가 단속되자 이번엔 러시아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포주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은 우스울 뿐이고, 반복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클럽의 영업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있으며, 감금시설의 쇠창살은 지금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기지촌에는 인신매매조직이나 포주들이 에이전시를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외국인여성을 인신매매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에이전시 사무실로부터 여성들의 비명소리와 흐느낌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경찰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실들 중 폐쇄조치를 받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

정부의 이러한 묵인과 방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은 다 무얼하고 있는지 이러한 치안 부재의 상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디 이 발표회가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우리 모두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토론자가 생각하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둘째, 최근의 법률지원 사례를 통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열악한 법적 지위 및 법률적 문제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신매매범과 포주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억압의 수단과 방식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유사하다는 것을 밝혔다(113-121p). 그러나 본 연구가 이러한 발견을 성매매의 억압적 본질을 드러내는 논의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문제점을 토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설명하기 위해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모집되고 이동되는 주요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이다. 이미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에 협조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여성들을 모집한다.

둘째, 인력송출업체들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외국에서 낮은 기술로도 가능한 직업, 즉 웨이트리스나 가정부와 같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리고 댄서나 접대부로 일할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높은 수입을 약속하기도 한다.

셋째, 결혼알선 에이전시를 통한 인신매매이다. 이러한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을 활용한다. 인신매매범들은 외국으로의 여행이나 이주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결혼알선업을 이용한다. 모집자 자신이 인신매매범이거나 인신매매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약속하고 만난 남성이 인신매매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남성들은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성산업에 여성들을 팔기도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195명 중에서 90.9%가 예술홍행 사증을 발급받은 여성들이라는 점을 보아도 위의 세 가지 대표적인 인신매매경로 중에서 세 번째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도 예술홍행 사증을 발급받은 여성들에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 수를 5,500명으로 추정하는 것은 오류이며, 새우터의 경우 이러한 여성들의 수를 2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인신매매의 주요경로에 대한 이해 부족

본 연구의 여러 곳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인신매매의 경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이것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인신매매에 대한 오해를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 여성들의 경우, 친구나 아는 사람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알음알음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해 알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주변의 아는 사람이 한국에 다녀와서 괜찮았다는 소리를 하면, 곧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59p).”라는 내용, 또는 “이미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 여성들이 현지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경험과 공식적인 정보가 쉽게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60p).”와 같은 내용을 보면,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한 인신매매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사적인 활동’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선택은 도망치거나 억압되거나 협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복의 위협을 무릅써야 한다. 또한 ‘억압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강요받고, 적은 돈을 가지고 혹은 전혀 돈을 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며, 고향에서 성매매여성으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인신매매범에 협조하는 가해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여성들을 직접 모집하고 이동시키며 감시하고 성매매를 강요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포주의 70% 이상이 여성들이고,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전에 인신매매되었던 한국인 또는 외국인 여성들인 것이다.

### 3. 자발성과 강제성을 구분하는 태도의 문제점

본 연구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급진주의적 입장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신매매 가해자의 통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속박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강제적 내지 강제적 선택을 행한 사람을 판별하여, 그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8p). 더 나아가 인신매매의 여섯가지 속성을 설명하면서, 인신매매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그 거래를 성사시킨다.”라고 하였다(9p).

그러나 이는 본 연구가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부속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5p).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여하는 중요하지 않다.

### 4. 한국인 남성의 성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의 문제점

성구매 행동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질문지의 문항들

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를 묻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

성구매자들에게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정책”에 대해 묻고 더 나아가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대한 인지도”를 왜 물었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153p). 한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부정책이나 1366 인지도에 대한 질문이 없다(229-244p). 토론자는 우리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사람은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여성긴급상담전화는 피해자들을 긴급구조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구매자들의 느낌을 점수로 매기도록 한 질문은 외국인여성들을 비하하고 있다(147-149p). ‘악하다-착하다. 지저분하다-깨끗하다. 느리다-빠르다. 보수적이다-진보적이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 왜 필요했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한다.

##### 5. 피해자지원의 개선점

본 연구는 소송추진 사례를 통해 법률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지원에서 증거수집지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신매매나 성매매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곤 하는데, 한국여성들의 경우에도 성매매업소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특히 외국인여성의 경우, 이러한 활동은 더욱 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지원 시 증거수집지원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수사기관과 민간구조서비스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지원단체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직접 지원단체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의 지원체계 접근이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신매매과정에서 지게 된 빚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토론문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 보고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여성 성매매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지방, 미군기지촌 지역과 기타 지역,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을 두루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는 점과 질문지를 통한 표본조사의 한계가 32명의 심층면접과 특히 국내유홍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출된 후 필리핀으로 귀환한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보완되었다는 점과 진실을 말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유홍업소의 여성들에게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쉼터의 여성, 귀국한 여성들의 증언이 덧붙여져서 비교적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이 보고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성매매여성의 실태를 다각적인 면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 보고서는 외국인성매매의 확산에 미군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 4천여명의 미군과 전국의 34개의 미군기지 그리고 10여개에 달하는 기지촌에서 행해지는 인신매매와 폭력은 외국인성매매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군과 한국정부는 미군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기지촌 안에서의 성매매를 묵인하고 인신매매를 조장해왔으며 이것은 국제적인인신매매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국제적인인신매매는 처음에는 미군기지촌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96년 정부가 E-6비자(공연예술비자)를 허가함에 따라 미군기지촌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합법적인 조직인 특수관광업협회에 의해서 외국인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성매매업소로 인신매매되기 시작했다. 지금 기지촌의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에서 한국인 여성들의 수는 급격히 줄고 외국인 여성들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10월 강력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인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함

으로써 인신매매에 대한 형량을 대폭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주변에서 이러한 성매매와 국제적인인신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외국인여성인신매매의 근절방안 가운데에는 미군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서 기지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를 조사하고 이에 연루된 미군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촉구하며 성을 사는 미군성구매자도 처벌하여 인신매매의 근절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군기지촌의 인신매매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나라들과 공조하여 기지촌 성매매,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인신매매문제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본 보고서는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성매매여성에 관한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더욱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① 조배숙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성매매피해자의 범주에 “외국인 여성중 여권등의 압류 또는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태에서 성을 하는 행위를 한 자”를 포함시켰는데 현재 통과된 법안에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다. 즉 여권등의 압류 또는 불법체류에 대한 협박을 받은 외국인 여성을 내국인과 구별하여 성매매된 자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강요, 감금 등 다른 구성요건의 합리적해석을 통하여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구별이 내국인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②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5조에는 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③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11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외국인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로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배숙법안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상당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계없이 국내취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위 특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은 국내 인신매매 및 성매매범죄의 유일한 단서와 증인으로서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때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신매매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임시체류자격’을 주고, 합법적 거주권리와 취업허가 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민 사증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허용하는 T사증도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피해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은 매우 혁신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192쪽). 이런 법안도 우리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2) 검사는 제 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원래 조배숙법안은 내국인 성매매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요청하였었다. 그러나 성매매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유독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만 강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4)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5)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 번째, 본 보고서는 외국인성매매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한국인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한국남성들이 내국인여성보다 외국인 여성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한국인 남성의 난잡한 술문화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남성들의 왜곡된 성매매의식과 태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 남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게 언급되어 있다. 한국인남

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국인 비하, 여성 비하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외국인여성의 인권침해를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런 업소를 찾는 한국남성들에게 알려주자는 것만을 대응방침으로 제시함으로써 남성구매자의 범죄성을 정당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성구매자체가 폭력이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잠재적 성구매자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처벌을 하되 남성성구매자교육을 통해 재범율을 80%에서 5%로 줄인 SAGE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성구매자남성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사회봉사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 번째, 본 보고서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민간단체들,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이를 여성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근절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힘이 약한 여성부로서는 이 모든 부서를 조정, 통합할 힘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성매매방지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실무적인 일을 여성부가 감당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성매매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정부는 성매매근절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부록: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법 설명자료  
윤락행위등방지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성매매
  - 2. 성매매알선등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의무등) 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심리의 비공개) ①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이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당해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에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④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3조(관할) ①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감명령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의료기관에 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교육·상담·치료나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8조, 제43조 및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신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벌 칙 등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3조(미수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제19조·제20조 및 제23조(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몰수·추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보상금) 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 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종류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 및 善導保護施設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自立自活施設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터로, 女性福祉相談所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 善導保護施設, 自立自活施設, 女性福祉相談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等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성매매방지법 설명자료

2003. 3.

여 성 부

### 성매매방지법 제정 경과 및 의의

####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개정 경위

- 1916 공창제도 시행(경무총감부령 제4호)
- 1946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에관한법령」 공포(미군정)
- 1947 공창폐지령
- 1961 '사회악 일소'정책의 일환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공포
- 1962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 설치·운영(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 ※ 일정지역내에서의 윤락행위 보호·묵인, 공창인정 결과 초래
- 1972 지역사회정화 차원에서 특정지역 폐지
- 1995 「윤락행위등방지법」 전문개정

#### □ 입안 경과

- 2002. 9. 11. 조배숙 의원의 86인이 여성단체 의견을 토대로 성매매처벌법안 및 성매매보호법안 국회 제출
  - ※ 양 법안 제정시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 대체
- 2002. 9. 12. 여성위원회(보호법) 및 법제사법위원회(처벌법) 회부
- 2002. 10. 24. 여성위원회 상정·소위 회부(보호법)
- 2003. 1. 14. 여성위원회 심사(보호법)
- 2003. 4. 24. 법사위 상정(처벌법)
- 2003. 7. 1. 법사위 공청회(처벌법)
  - ※ 법무부 대안 제출 의결
- 2003. 11. 19.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심사(처벌법)
  - ※ 법무부 대안 기준
- 2003. 12. 24. 여성위 법안심사소위 1차 심사(보호법)

- 2003. 12. 24. 법사위 1소위 법안심사(처벌법)
  - ※ 보호법과 병합 심의키로 함
- 2003. 12. 29. 여성위 법안심사소위 2차 심사 및 의결(보호법)
- 2003. 12. 29. 여성위 전체회의 의결(보호법)
- 2004. 1. 10. 법사위 회부(보호법)
- 2004. 2. 4.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 1소위 회부(보호법)
- 2004. 2. 26.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 2004. 3. 2. 본회의 통과

#### □ 입법 意義

-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형 입법 모델 제시**
  - 여성단체에서 제정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한 후 여성부와 법무부 등 법률 소관부처에서 부처의견 및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제정과정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인 참여형 입법 모델 제시
    - 여성단체에서 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 청원함(2001 여성단체연합)
    - 여성단체에서 입법 청원한 내용을 근간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마련하여 의원 발의(2002)
    - 여성부는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의식 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2001)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2002) 의원 발의안의 기초 참고자료 제공
    - 법무부는 처벌법에 대한 법무부 대안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
  - 공청회, 국회 법안 심사 및 수정안 마련 등에 정부와 여성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기여
- 사문화 되다시피한 「윤락행위등방지법」(61년 제정)이 40여년만에 폐기되고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고, 양자관계로 보았던 성매매를 알선행위가 존재하는 3자관계로 재규정해내면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며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성매매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성만을 죄악시키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가치 중립적인 '성매매'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자리 잡음

-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분리 입법,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 성매매알선등 성매매와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의 형벌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행정작용을 각각 규정하여
  - 소관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제고함
-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매매예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입법화하여 성매매방지 관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
  - ▲ 선불금과 폭행,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이나 ▲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여성 ▲ 선불금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하는 경우 그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여 그 동안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자수나 신고를 꺼리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관련 **국제협약을 충족**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성매매처벌과 피해자 보호문제에 관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 2000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강구한 것이며
    -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과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버금가는 입법조치를 한 것임
    - 특히 서구와 달리 성산업이 번창한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선도적으로 강력한 알선행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만든 것은 모범사례로 꼽힐만한 것임
- 성매매여성이 선불금등 각종 채무와 신체적 제약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함으로써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됨**
  - ‘**선불금**’ 무효 범위확대 및 선불금 악용 고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성매매여성의 업소이탈을 촉진**
    - 영리목적의 윤락행위알선자가 윤락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형식에 무관하게 무효로 함(윤방법) → 성매매알선행위, 소개업자등이 성매매여성에게 가지는 채권과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까지 무효로 함
    - 또, 검사 또는 경찰관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성매매여성이 고소·고발 당한 경우

금품제공이 성매매 유인이나 강요 또는 업소이탈방지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수사하도록 하여 여성들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고 탈성매매의 동기를 부  
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등과 연계, 신고자나 성매매 또는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함

-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신뢰관계자 동석, 법원에서의 심리의 비공개 등
- 외국여성의 경우, 강제퇴거 유예, 외국인보호시설에의 보호 유예등의 조치 근거 마련

○ 다양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여 성매매알선을 근  
절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성매매알선범죄수익을 몰수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성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함

- 성매매의 강요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서 최  
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선불금등으로 성을 팔도록 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함

-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였음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한 소위 '포주'나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  
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 성매매광고행위도 그 양태에 따라 처벌을 달리함

- 성매매업소의 광고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 핸드폰 메시지등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도 위와 같음
-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업소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하의 벌금을 각각 처함

- 위 성매매강요, 알선, 광고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정하도록 함

□ 주요골자

처 별 법

1.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 '성매매' 개념을 새로이 정의
  -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 도입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행위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양태를 규정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구체화
  - 위계·위력에 의한 인수·인계 외에 청소년, 심신 미약자등에 대한 선불금 매개 유인 행위, 모집·이동·은닉 행위까지 포함
  - ※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나 성을 파는 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배·관리'로 규정

2. 국가등의 책무 규정

- 성매매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과, 국가간의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규정

3. 금지행위의 규정

-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 소개·알선하는 행위, ▲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광고와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행위로 명백히 함

4. '성매매 피해자' 개념도입과 형사처벌의 특례

- 성매매 피해자 정의

-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 심신미약, 중대한 장애인**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형사처벌 대상 제외와 보호
  - 성매매피해자의 불처벌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 자 또는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신고자등) 비공개하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 5.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 규정 확대·강화

-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불법원인 발생 채권임을 알면서 양수·인수한 경우포함)
-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 선불금 이용 성매매 유인·강요, 이탈 방지 등 확인, 수사 참작 의무화

#### 6. 심리의 비공개 근거 마련

- 성매매 사건관련 자수자, 신고자,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 7.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 성매매 사건 관련 수사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신고, 고소, 고발 포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8.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9. 성매매자에 대해 보호사건의 처리 우선

-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원칙화
- 보호처분: 성매매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의 위탁, 상담위탁, 치료 위탁 등
  - 보호처분기간은 6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합산하여 보호 처분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 할 수 없음)

#### 10.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성매매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11. 벌칙의 형량을 조절하여 타법과 형평성 유지

- 성매매강요죄에 대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함
  -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 친족·고용 관계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강요죄를 범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심신미약자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의 경우,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낙태나 불임시술을 하게 하는 경우,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마약등을 사용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구성원으로 강요죄를 범한 경우는 행위태양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5년 이상의 징역
-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하여 대가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함
  -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성을 파는 자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관련 광고행위에 대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법정형 달리함
  -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할 자의 직업소개 광고행위, 성매매 또는 알선등행위가 행하

여지는 업소의 광고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관련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관련 광고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1. 범죄단체의 가중 처벌**

성매매 및 인신매매관련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함

## 보 호 법

### 1. 법의 목적

-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함

### 2.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초·중·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 3.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대상 및 기능으로 지원시설을 재분류
  - **일반지원시설**: 입소희망자, 보호처분 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숙식제공과 취학과 교육 또는 자립을 지원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대상 3월내 숙식 제공과 귀국을 지원
  - **자활지원센터**: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 4. 의료비의 지원 근거 마련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항목(산부인과, 피부과 또는 치과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시 수사기관의 협조절차 규정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긴급 구조시 경찰동행 요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법률 제06801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0호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05847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3호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05358호

전문개정 1995.1.5 법률 제04911호

제정 1961.11.9 법률 제771호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상 유의사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5조 (국가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보장)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삭제<1999.2.8>

## 제 2 장 선도보호

제8조 (보호처분) ①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법중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조 (선도보호조치)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보호자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경우 요보호자가 20세 미만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등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퇴소를 요청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1.1.29>

제10조 (선도보호의 내용)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2001.1.29>

1. 상담 및 치료
2.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3.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4.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5. 기타 선도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 3 장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11조 (시설의 종류) ①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보호소: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2. 선도보호시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3. 자립자활시설: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12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1997.12.13,

1999.2.8, 2001.1.29>

제13조 (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생활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훈련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요보호자를 선도보호함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1.1.29>

제13조의2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입소를 원하는 요보호자의 입소의뢰를 받은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입소대상자에 우선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9.2.8]

제14조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상담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2001.1.29>

제15조 (여성복지상담원) ①시·도,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상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18>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2.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3.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5.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안 시설의 활용 알선

6. 가정문제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계몽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8.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상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16조 (수탁의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의 입소를 위탁 또는 의뢰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조 (폐지·휴지등의 신고)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9.2.8]

제18조 (시설의 폐쇄등<개정 1997.8.22>)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을 거부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1.1.29>

## 제 4 장 보칙

제19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

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1.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시설 및 제14조제2항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1.29>

## 제 5 장 벌칙

제2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20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③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

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1.1.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제4911호,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및 지방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지방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및 지역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로 본다.
- 제3조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로 본다.
- 제4조 (부녀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부녀상담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로 본다.
- 제5조 (부녀복지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용·배치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사회복지사업법)<제5358호,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허가의 취소등)”을“(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⑥생략

⑦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2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제5847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상담소 운영의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상담소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상담소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3조 및 제2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제14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모·부자복지법)<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내지 ⑥생략

##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

발 행 처: **한국사회학회**

발 행 일: 2004년 3월 11일

인 쇄 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2) 886-2236, 2214

---